

- 라. 糞尿收集 運搬業, 쓰레기收集·運搬業, 糞尿處理業, 淨化槽清掃業 등 一般廢棄物處理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市長·郡守의 許可를 받도록 함 (法 第11條)
- 마. 糞尿處理施設 또는 쓰레기處理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廳長의 승인을 얻도록 함 (法 第11條)
- 바. 일정規模 이상의 畜産施設을 設置하는 者는 畜産廢水淨化施設을 設置하도록 함 (法 第15條)
- 사. 産業廢棄物을 排出하는 事業場을 經營하는

者는 市道知事에게 申告하도록 함 (法 第21條)

- 아. 國家 또는 市·道知事등은 産業廢棄物의 廣域處理를 위한 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할 수 있도록 함 (法 第23條)
- 자. 産業廢棄物處理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廳長의 許可를 받도록 함 (法 第43條)
- 차. 일정규모 이상의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施設의 유지·管理에 關한 技術業務를 擔當시키기 위한 技術管理人을 두도록 함 (法 第27條)

◎ 환경청공고 제86-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 및 취지를 법령안입업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6년12월26일

환경청장

1. 법령명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안)**

2. 주요내용

- 가.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여야 할 사업활동에 수반한 “다량”의 쓰레기의 범위를 정함 (안 제3조).
- 나.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인 “일정규모”이상의 시설물을 정함 (안 제4조).
- 다. 분뇨정화조 설치대상시설물을 정함 (안 제5조).
- 라.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대상인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시설을 정함 (안 제6조 및 별표 1).
- 마.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중 내부청소에 관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함 (안 제7조).
- 바.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 시

설을 정함 (안 제8조).

사. 교육대상인 폐기물처리 담당자를 정함 (안 제10조).

아.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업무를 정함 (안 제12조).

차. 기타 상세한 내용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안) 본문 참조.

3.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1987년1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청장 (참조: 폐기물관리국장 423-4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및 주소)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축

부 칙

산 시설의 범위)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정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축산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1과 같다.

제13조 (과태료의 부과 등)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축산폐수정화시설설치대상축산시설

시설의종류	규 모	포 함 시 설
돈사시설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단, 특별청소지역에서는 면적 100제곱미터이상	• 낙농시설 • 육우사육시설 • 양돈시설
우사시설	면적 600제곱미터이상 단, 특별청소지역에서는 면적 300제곱미터이상	• 말사육시설 • 경마장 • 양계시설
마사시설	면적 600제곱미터이상 단, 특별청소지역에서는 면적 300제곱미터이상	• 오리사육시설
가금사시설	면적 500제곱미터이상 단, 특별청소지역에서는 면적 250제곱미터이상	

(주)

1. 동일 사업장내에서 2개 이상의 축산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종류가 다른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이 1이상인 경우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 대상으로 한다.

$$\frac{\text{설치되는 해당시설 면적}}{\text{해당시설 기준면적}} + 000 \geq 1$$

2. 본 규정은 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은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고시

○농림수산부고시제87-5호

초지법 제 2 조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87년도 초지조성 단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7년 2월 3일

농림수산부장관

'87년도 초지조성단비 (1헥타당)

1. 경운초지 : 1,219천원
2. 불경운초지 : 952천원
3. 임간초지 : 806천원

우유마신 건강가족 질병없는 웃음가족